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12, Number 4, December, 2010: pp. 405~427
통상정보연구 제12권 4호 (2010년 12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10. 11. 5
심사(수정)일 : 2010. 11. 25
게재확정일자 : 2010. 12. 20

태국의 전자거래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전문 및 일반규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Thailand

심종석(Chong-Seok Shim)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주저자)

오현석(Hyon-Sok Oh)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목 차

Ⅰ. 서 론
Ⅱ. 태국 전자거래법의 의의와 주요골자
Ⅲ. 태국 전자거래법의 평가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bstract

This legal study is to compare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Thailand(hereinafter 'ETA') with mainly other countries electronic transactions acts, such as UNCITRAL MLEC, UECIC, UETA, UCITA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ETA is consisted of 6 chapters which included preamble and definitions. Each chapter's main point as follows. Preamble is related to the name, time of legal effect, scope and definitions. Chapter 1 is not only general principl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required restriction in addition to specify the limit of application, documentation, evidential weight in reference to the data message, but also the conditions of offer and acceptance through data messag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data message, certification between originator and addressee. According to media-neutrality and the effectiveness security requirement of data message under the information system, legal certification is related to the exchange's declaration of intention, define about originator-addressee of data message. Chapter 2 is composed to provide expressly about the effectiveness security in electronic signature. Those contents are to compare the MLEC, UECIC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Korea. Chapter 3 is related to legal definitions that present legal requirement about service relating electronic transaction which contents accept domestic law, the adequate requirement as eligibility, satisfied matter,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and other detail standard. Chapter 4 is deal with the transaction which are public sector and thos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also this chapter are composed regulations about direct-indirect purpose of Thailand domestic electronic government.

Key Words : ETA, MLEC, UECIC, UETA, UCIT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Korea.

Ⅰ. 서 론

태국은 우리나라의 15번째 무역국으로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약 70% 이상을 수출지향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중진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주지하듯 태국은 총 인구 5억의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 AFTA[1])의 중심국가로서 인도네시아 다음의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름지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태국과 상호 지속적이고도 친선·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견실히 구축하고 있어, 현재 이후로 태국은 우리나라가 AFTA 시장 진출 시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우회 수출기지로서의 전략적·입지적 중요성이 가일층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

2010년 상반기 태국은 대내적으로 레드셔츠 시위로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더블딥(double dip)에 직면하여 심각한 국가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내수와 수출이 진작되면서 AFTA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견인하였다. 곧 실물경제지표상 태국은 금년 1분기에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과 동시에 올해 당해 추정치가 9% 내외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의 당해 경제지표는 우리나라의 1980년대 말 이후 90년대 초 고성장 시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괄목할 만한 경제현상은 2009년 대비 전체 수출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 중 컴퓨터 및 IT 기반 전자기자재가 주력 품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태국이 당해 산업분야의 중간 생산거점으로서의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실질적 투자가치가 제고되어 이로부터 당해 기간산업의 순기능적 파급효과가 가일층 상승하고 있음을 함의한다.[3]

현재 태국은 대내·외적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방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무

---

1)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6개국이 유럽의 단일시장화와 1994년 1월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 1월 결성된 경제통합기구이다. 본래 1994년부터 역내 관세장벽 등을 점차 낮추어 2003년까지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한 뒤, 우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가운데 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4개국을 제외한 초기 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동실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CEPT)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3년 1월 1일부 공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역내 거래에서 공산품 등 관세인하 대상 상품 관세율을 평균 5% 이하로 낮추고, 이후 점차 관세율을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무관세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과 국가안보 관련 품목 등은 제외되었고, 이후 다른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역내의 산업별·업종별 무역장벽 철폐와 경쟁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태국과 우리나라의 제반 협력구조에 대한 상세는 「http://www.thaiembassy.or.kr」(2010. 11. 05 기준) "The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참조. 이하 본 고에서 참조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본 고 제출시점 현재까지 웹상에 현시(display)되어 있음을 참고한다. 아울러 기술의 편의상 프로토콜명(http://)은 생략한다.

3) 태국 경제지표에 관한 상세는 나희량,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경제의 대응과 변화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동남아학회, 2010. 148-150면.

엇보다도 전자·자동차 등 14개 전략산업의 기간망 연계·확충을 통해 AFTA 허브로서의 도약을 의욕하고 있는데, 실례로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촉진, IT 미디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태국의 국가정책적 산업부양의 추이를 주시함에 있어 현재 태국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급속한 추진을 전개하고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분야에서, 특히 기초적 기반인프라로서 법제적 차원에서의 입법성과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곧 태국은 전자거래에 관한 국가 차원에서의 기반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서 당해 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순기능적 환경개선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과 동시에, 이에 상당한 소기의 입법성과가 개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같은 상황을 예의 주시함에 있어 태국의 현행 전자거래에 관한 기축법제로서 그 지위를 담보하고 있는 이른바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 이하 'ETA')을 중심으로 동 법의 법적 의의 및 특·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본 고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 및/또는 시사점은 첫째 태국의 ETA를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고찰함으로써 우리 관련 법제상의 문제점 내지 개선점을 적시하고, 둘째 우리 현행법상의 입법적 열·우위를 추론하여 그 시사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셋째 이로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적·상무적 관계개선 및 양자 간의 합목적성 도모에 적의 참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고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취하여 이상의 소기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해 취한 분석도구는 태국 ETA를 위시하여,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4]과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 국제계약에있어전자적의사표시의이용에관한UN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이하 'UECIC'[5])과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4) 법률「제10250호」(2010.10.13).

5) ① 여기서 본 고의 비교법적 분석도구로서 제반 법규범의 소개 및 의의는 그간 각양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그 결과가 상당히 집적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다만 최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CISG) 등의 부속협약으로서 그 법적 의의를 부각하고 있는 UECIC에 대하여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UECIC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의 제반 모델법이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과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계약의 체결 시 CISG를 적용할 경우 법적 장애 및 보충의 여지가 예견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에 따라 성안되었다. 요컨대 UNCITRAL에 의해 성안된 UECIC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이 국제상거래의 효율성 증대 및 무역연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종전 격지자간 계약당사자와 시장에 새로운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전제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적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이 국제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 제반 국제통일법규범의 적용으로부터 기인하는 장애를 비롯한 국제계약상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따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안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UECIC는 국제상거래에 임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국제계약의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및 '기능적 등가성'(functional equivalence)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국제사법상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실익을 담보하고 있다. 나아가

: 이하 'UNCITRAL MLEC'[6]),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이하 'UETA'[7])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 이하 'UCITA'[8]) 등이다.

이상의 법규범을 본 고의 분석도구로 취한 이유는 주지하듯 개별 법규범이 국제상거래에 있어 선도적 입법례로서 그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과 동시에 각국 관련 입법 시에 모범법 내지 입법표준으로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개진하였다는 성과에 기인한다.

Ⅱ. 태국 전자거래법의 의의와 주요골자

1. 제정취지

태국의 ETA는 1997년 태국 국가정보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Committee : 이하 'NITC'[9])의 주도하에 입법계획안이 발의되어 2001년 최종 성안·공표된 연혁을 보유한다. 1997년 이전까지 태국은 그간 독립된 전자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에, 당시 전자거래에 관련한 부분은 타 법률 내지 법령의 부칙에 기하여 또는 당해 법령의 유추적용으로부터 법적 규율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 같은 상관 하에서 태국 정부는 NITC 주도하에 자국의 기업 및 개인이 외국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입법불비에 따른 불이익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경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CITRAL의 MLEC 등을 기축법제로 하여 이를 자국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재·개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요컨대 태국의 ETA는 명실공히 UNCITRAL MLEC에서 수용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을 가감없이 계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동일한 시각에서 ETA의 주요 특징 내지 제정취지를 요약하면, 첫째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에 있어 핵심적 매개(intermediary)

UECIC는 상이한 법률·사회·경제제도를 가진 당사국이 적의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입법적 함의를 새길 수 있다. UECIC에 대한 상세는 심종석,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11. 전문을 참조.

② UECIC 전문은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6-57452_Ebook.pdf」를 참조.

6) MLEC 전문은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5-89450_Ebook.pdf」를 참조.

7) UETA 전문은 「www.law.upenn.edu/bll/archives/ulc/ecom/ueta_final.pdf」를 참조.

8) UCITA 전문은 「www.nccusl.org/nccusl/ucita/UCITA_Summary.pdf」를 참조.

9) NITC의 역할 및 제반 활동사항에 관해서는 「www.nitc.go.th」을 참조.

로 기능하고 있는 전자문서(data message)[10]를 기존의 종이문서와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로서 동일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이로부터 국내·외 전자거래의 이용 촉진과 규율에 기여하고, 둘째 종전의 전자거래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료히 제시하여 정부주도의 전자거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안성 강화, 정보보호,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 내지 합목적성 표창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편 ETA의 입법에 따른 법적 실익은, 종이문서의 법적·기능적 등가물로서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거래의 법적 기반 마련에 따른 국제상거래의 안정성 확보, 국제적 표준으로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 PKI)의 수용에 따른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국내·외 공인인증서(CA)의 사용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 제거, 제반 국제 표준의 수용에 따른 국내법과의 조화 도모, 전자지급결제를 위한 표준 마련에 있어서의 법적 기반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구성체계

ETA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를 포함한 전문(preamble) 6개조와 이하 총 6개의 개별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은 ETA의 법명(제1조)과 효력발생시기(제2조), 적용범위(제3조) 및 용어의 정의(제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내용이 본 고의 분석도구로서 여타 국제법규범 내지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명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전문 제4조는 차례로 거래(transaction), 전자적(electronic),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정보 및 정보시스템(information & information system), 전자문서(data message),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자료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작성 및 수신자(originator & addressee), 중개자(intermediary), 인증서(certificate), 서명자(signatory)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UNCITRAL MLEC 및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 견주어 '거래와 전자거래', '정

10)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분석도구로 취한 여타 법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s)가 우리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전자문서의 의미와 상통하고 당해 규정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와의 상호 대비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이하 '전자문서'(data messages)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제반 국제기구 및 각국간 실정법에 의해 정의되어진 전자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법규범을 참고할 수 있다.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1997)', Chapter Ⅲ.,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Article e3.,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90)', Article 11., UETA, Section 2, (7), (13)., UCITA, Section 102, (28), (54)., E-Sign, Section 106, (4)., UECA, Article 1, (a)., 일본의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關する法律', 第2條., 말레이지아의 'Digital Signature Act (1997)', Article 2 등.

보', '전자서명', '인증서 및 서명자'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여 정의하거나 또는 구체화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동 법의 적용상 순기능적 차이점이 돋보인다.

제1장은 전자거래의 일반요건 및 제한요건, 그리고 적용범위를 특정함과 동시에 전자문서에 대한 문서성(documentation)과 증거력, 전자문서에 의한 청약과 승낙의 기준 및 효력발생시기, 전자문서 작성자와 송·수신자 간 인증 및 서명요건, 전자문서의 오류와 착오의 법률효과, 신의칙에 기한 특단의 주의의무, 매체중립성(media-neutrality)에 따른 전자문서의 유효성 보장요건, 정보시스템에 의한 의사표시 교환에 따른 법적 인증요건,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등에 대하여 명정하고 있다.

제2장은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확보에 대한 명문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과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에 비견된다. 곧 태국은 별단의 전자서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ETA에서 병합하여 다루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전자서명의 법적 요건 및 법률효과,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인증요건, 인증서비스 시스템 제공에 따른 기준과 법적 제한, 전자서명의 신뢰성 충족요건 등이다.

제3장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내법적 수용 또는 충족요건으로서 자격, 구비사항, 재정자립도 및 기타 세부 기준을 명정하고 있다.

제4장과 제5장은 공히 태국 내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거래에 따른 적용요건 내지 범위를 명정하여 태국 국내 전자정부에의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창하고 있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11]

3. 주요 골자

총 제6장 제46조로 구성되어 있는 태국의 ETA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preamble) 외에 제1장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 제2장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s) 및 제3장 서비스부분의 전자거래(service business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제4장 공공부문의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public sector), 제5장 태국 전자거래위원회(electronic transactions commission)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및 그 요건, 제6장 벌칙규정(penalties) 등을 명정해 두고 있는, 이를테면 전자서명을 합체한 복합·다기능의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11) ETA의 전문은 「www.thailaws.com」에서 하이퍼링크에 따라 「Acts & Decree」를 참조.

특징이 있다. 아울러 태국 ETA에서는 달리 명시적으로 표창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전자거래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제반 규정이 UNCITRAL MLEC을 그대로 계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TA 각 장의 주요 골자를 차례로 살피면, 우선 전문은 여타 법규범과는 달리 장별 조문구성으로 체계화 해두지 않고 오로지 개별 조문으로만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명, 효력발생시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로 구성하고 있다. 곧 ETA의 효력은 정부관보 게재 후 120일 이후부터 효력을 개시하며, 적용범위는 칙령(royal decree)에 의해 제한된 거래를 제외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거래에 대한 민·상사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고, 다만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와 관련된 여하의 관련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소비자 거래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살피기에 동 규정내용은 UNCITRAL MLEC의 규정을 그대로 계수한 결과로 간주되나,[12] 다만 민사적 성격의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이할 사항이다.[13] 이는 ETA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transaction'에 대한 의미를 UNCITRAL MLEC의 'commerce'와 명료히 구분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제1장은 전자거래에 관한 이른바 총칙규정으로서 전자문서의 효력, 문서성(documentation), 전통적 종이문서(traditional paper-based documents) 또는 스탬프와의 기능적 등가성(functional equivalence), 전자문서의 신뢰성 및 진정성 요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부인방지(non-repudiation) 등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다.

제2장은 전자문서의 법률효과 발생의 기능적 매개(functional intermediary)로서 전자서명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골자는 전자서명을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자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전자문서의 진정성(authenticity) 및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한 상징물로서 전자문서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를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문서의 문서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14]

제3장은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전자거래의 일반규정을 명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규정내용이 칙령에 의한 제한요건 및 법적 구속력 확보, 타 법률과의 관계, 전자거래의 한도액과 이

12) *UN Publication Sales No. : E99.V4 (ISBN 92-1-133607-4)*, 1999, paras. 26-27.

13) ETA, Sec. 3, "This Act shall apply to all civil and commercial transactions performed by using a data message, except the transactions prescribed by a Royal Decree to be excluded from this Act wholly or partly."

14) 일반적으로 진정성(authenticity)은 정보통신시스템(information or communications system)에서 사용자, 장치 또는 실체를 확인하여 이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을 설명되고, 무결성(integrity)은 자료나 정보가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속성을 말한다.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Ⅲ.

에 상당한 법적용의 문제, 동 법에 있어 여타규정에서의 제한과 단서규정 및 법원에의 재량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4장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전자거래를 제35조 단일조항으로서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서비스 부문에 한하여 주 기관(state agency)의 주무사항으로써 신청·허가·등록·행정명령·지불·통지 또는 어떠한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당해 조치가 칙령에 의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를 생성한 경우 ETA 적용에 의한 법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제5장은 태국 전자거래위원회의 권한·의무·위원회 구성의 자격요건 및 임기, 본 위원회와 관련된 타 위원회와의 협력과 공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15] 제6장은 동 법의 적용에 따른 벌칙규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Ⅲ. 태국 전자거래법의 평가

1. 전문(Preamble) 및 용어의 정의

1)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

태국의 ETA(electronic 'transactions' act)는 그 공식명칭에 있어 '거래'를 'transactions'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동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보충되는데, 그 내용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사적 또는 상사적 활동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6]

이는 외견상 UNCITRAL MLEC 법명에서의 'commerce'와 제1조 '상사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이라는 적용범위에 연관되는 규정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 제2조 제1호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연관되는 규정이다.[18]

---

15) 본 고는 분석도구로 취한 타법규범과의 비교법적 고찰에 따른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하 태국 전자거래법의 전문과 제1장, 제25조까지를 본 고 연구범위의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16) ETA, Sec. 4, (1), "transaction means any act relating to a civil and commercial activity or carrying out of the affairs of the State as prescribed in Chapter 4.", (3) "electronic transaction means a transaction in which an electronic means is used in whole or in part."

17) 법률「제10172호」(2010.03.22).

18) 이 경우 우리나라는 양 법 당해 조문에서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동일한 의미로 의제하고 있다. 곧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항의 내용은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

이 경우 UNCITRAL MLEC는 동 조문의 해제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배척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거래(commerce)로 표현하고 있음과 동시에[19] 그 적용범위를 상사적 활동에 국한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태국의 ETA는 민사적 활동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기한 우리나라 양 법을 비교할 경우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특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보다 진일보한 입법규정이라고 판단된다. 곧 태국 ETA는 민사적 활동에 대한 포괄적 수용을 명시적으로 표창하고 있음에 따라 ETA 적용상 하위 또는 관련 법률과의 충돌에 따른 혼선의 개연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 또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대한 적용범위 내지 개념상 명확한 구분을 명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적 실익이 부각된다.

입법적 실익에 따른 논점에 대하여 'transactions'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번역되고 있음이 통례이나, 강학상 법률용어로서는 달리 '법률행위'로 번역된다. 요컨대 법률행위(transaction)는 일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성취하는 등 그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개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써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transaction'에 포함된다. 따라서 'transaction'은 계약(contract)보다 그 의미가 광의적이다.[20]

그렇다면 'transaction'은 상행위 활동에 관련한 'commerce'보다는 그 적용범위가 넓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결국 태국의 ETA 법명에 비추어 동 법은 명실공히 민사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거래는 물론 그 적용대상을 상행위에 관한 상거래 활동에 있어서의 주체로서 상인뿐만 아니라 거래의 통념상 소비자에까지 그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법적 의의를 부각할 수 있다.

당해 법적 의의에 따른 실익을 추론하면,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거래(commerce)라고 하는 의미는 법률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인 바, 그렇다면 상거래는 타인에 대한 대상의 특정에 있어 그 주체를 일정한 상업적 이해득실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인(merchant)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국가간 상거래에 있어 법적 안정성(legal stability) 및 예견가능성(forseeability)을 제고하고 법적용에 따른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전자상거래와 전자거래의 개념과 그 범위는 각각 달리 사용되고 구분되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데 그 핵심을 두고 있다. 이는 곧 국가 간 전자거래에 있어 기업[상인]간(B2B)의 상거래는

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다.

19) *UN Publication Sales No. : E99.V4 (ISBN 92-1-133607-4), op. cit.*, p.3, ****.

20) Steven H. Gifis,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6, p.519., 연관규정으로서 UCITA, Sec. 102, (7), (11), (26), (30), (45).

이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범위로 포함하고, 달리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로 바꾸어 말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분에 따른 법적 실익은 무엇보다도 각국의 실정법상에서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경향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계약자유의 원칙(liberty of contract)에 따라 상대국 국제사법(international private law) 내지 강행법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기업[상인]의 신속·민활한 상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배려하고 나아가 이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전제할 때, 이 같은 구분과 법적 실익이 합리적일 것임을 시사한다.[21]

결국 태국의 ETA는 전자거래의 적용범위를 민사적·상사적 활동에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고 있음과 동시에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 적용대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국제상거래 활동에 국한하고 있는 UNCITRAL MLEC에 비하여 보다 확장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및 유관 법률에 비하여 그 대상을 명료히 특정·포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법적 의의를 돋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전자적(electronic) 및 전자문서(data message)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이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한편 UNCITRAL MLEC 및 UECIC에서는 태국의 ETA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data message)를 전자·자기·광학적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전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전자우편·전보·전신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22] 다만 특이할 것은 태국의 ETA에서는 전자적(electronic)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자적·전기적·전자기적·광학적·자기적 수단의 장치 또는 기술에 관련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

21) 동일한 시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 L 178/7, paras. (55), (56).

22) MLEC, Art. 2, (a),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UECIC, Art. 4, (c),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agnet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ETA, Sec. 4, (5),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stored or processed by electronic means, such, as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facsimile."

다. 이는 미국의 UETA 제2조 제6호 및 UCITA 제102조 제26호와 동일하다.[23] 다만 태국의 ETA 및 MLEC, UECIC에서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으로 규정하고 있는데,[24] 이는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및 UETA, UCITA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과는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25]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 판단컨대 개별 법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정보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은 공히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저장 기타 그 밖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용어의 정의 차원에서는 외견상 별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우리나라 전자거래법상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테면 '전자적 장치와 체계'라고 하는 명료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개념에 대한 명확성 및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ETA 등 여타 법규범에 비하여 순기능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

통상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이라는 개념에 의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은 전자거래 추이에 비추어 점차 그 사용이 상례화 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제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데이터 메시지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6]

---

23) ETA, Sec. 4, (2), "electronic means an application of an electron means, an electrical means, an electromagnetic means or any other means of a similar nature including an application of an optical means, a magnetic means or a device in connection of any of the aforesaid means.", UETA, Sec. 2, (5)., UCITA, Sec. 102, (26), "electronic means relating to technology having electrical, digital, magnetic, wireless, optical, electromagnetic, or similar capabilities."

24) ETA, Art. 4, (7), "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of (data message) processing by using an electronic device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processing a data message.", MLEC, Art. 2, (a), UECIC, Art. 4, (f), "information system means a system for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or otherwise processing data messages.",

25) UETA, Sec. 2, (11), UCITA, Sec. 102, (36),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means an electronic system for creating, generating, sending, receiving, storing, displaying, or processing information."

26) UECIC, Art. 4, (g)., "automated message system means a computer program or an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to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data messages or performa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view or intervention by a natural person each time an action is initiated or a response is generated by the system.", UECIC, Art. 12.,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or by the interaction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or intervened in each of the individual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or the resulting contract." UECIC Art. 12는 계약체결 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의 이용과 관련, 당해 시스템과 송·수신자간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가 당해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요컨대 전자적 대리인 내지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은 전자문서에 의한 국제상거래에 있어 매매계약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포함하여 신원·자격·상거래 적격 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나아가 상거래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매개로써의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적의 고려하여 제반 국내·외 법규범 하에서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대한 법률효과 내지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각국의 실정법 및 국제기구에 의한 법규범에서 인증 또는 인증시스템, 참여주체 및 시스템 제공자, 전자적 대리인, 자동화된 거래(automated transactions) 등의 사안에 관한 책임귀속과 그 법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7] 뿐만 아니라 실무적 전자문서 인증시스템 구현수준에 있어서도 당사자 자치 또는 약정 및 규약 등에 의해 동일한 효력을 부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28]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및 인증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띨 것인지의 여부는 요컨대 국내·외 법규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어떻게 전향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를테면 급진전 되고 있는 기술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실정 법규범을 적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절한 결론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종이문서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온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 결여로 당해 상거래계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태국 ETA에서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 또는 전자적 대리인 등 이상의 요건을 정의규정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여타 개별 조문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음에 따라 그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능상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에 수용하여 이를 합체하여 다루고 있거나 또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automated information system)으로 의제해 두고 있다.[29] 정의규정에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NITC에서는 별단의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컨대 태국은 동 ETA 예하에 하위입법을 마련함에 있어 시의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전자거래의 추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개정입법 내지 관련 입법에 대한 견련성 내지 합목적성을 견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는 현재까지 총 21차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앞선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의 정의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다.

27) MELC, Art. 13, (2), UECIC, Art. 4, (7), UETA, Sec. 2, (6), UCITA, Sec. 102. (27),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호 등.

28)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의 구현사례 및 법적 효력에 관한 상세는 심종석,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3.을 참조.

29) ETA, Sec. 19, (1), "where the originator has not agreed that the acknowledgement be given in a particular form or by a particular method, an acknowledgement may be given by any communication by the addressee, whether by an automated information system or by any other method, or by any conduct of the addressee sufficient to indicate to the originator that the addressee has received the data message."

에 걸친 개정작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에 연혁에 갈음하여 유추할 수 있을 사항이다.

4) 기타 정의규정

기타 ETA 일반규정에서 명정하고 있는 사항은 대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을 포함하여 여타 법규범에 비할 경우 별단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앞서 전술한 바를 제외하고 ETA에서는 정보(information)을 서면형식으로 표현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부수하는 숫자·소리·이미지 또는 이로부터 함축 가능한 일체의 형식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의 연관규정으로서 기능한다. 당해 용어의 정의는 UETA 및 UCITA 규정에 비추어 그 내용이 유사하다.[30]

마찬가지로 중개자(intermediary)에 관한 정의 또한 UNCITRAL MLEC의 규정과 유사한데, 그 내용은 특정한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타인을 대신하여 당해 전자문서를 발신·수신 또는 저장하거나 그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31]

다만 ETA 정의규정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사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서명 및 국내법상의 효력요건을 부가하기 위한 관련 용어를 제외하고, 여타 법규범에서는 존치해 두고 있지 않은 거래(transaction),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해 용어의 법적 시사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2.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규정

1) 전자문서의 문서성 및 법적 승인

법리상 전자문서가 전자계약의 수단으로써 유효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통적 종이문서에 상당하는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충족요건은 첫째 전자문서에 포함된 기록 또는 내용의 차이가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전달수단의 차이로 보아 법적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30) ETA, Sec. 4, (4), "information means an incident or fact regardless of whether expressed in the form of a letter, number, sound, image or any other form capable of connotation by itself or though any means.", UETA, Sec. 2, (10), UCITA, Sec. 102. (27), "information means data, text, images, sounds, codes, computer programs, software, databases, or the like."

31) ETA, Sec. 4, (11), "intermediary means a person who, on behalf of another person, sends, receives or stores a particular data messages, including the providing of other services with respect to that data message.", MLEC, Art. 2, (e) ;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data message, means a person who, on behalf of another person, sends, receives or stores that data message or provides other services with respect to that data message."

할 것,[32] 전자문서 관계 당사자가 전자문서에 수용된 정보, 즉 기록·내용에 항시 접속할 수 있어야 할 것,[33] 전자문서가 보존·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 아울러 이상의 전제와 조건은 달리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해서라도 배제될 수 없어야 함이 보장되어야 할 것 등이다.[34]

이에 대하여 ETA 제7조에서는 전자문서[정보]가 그것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통적 종이문서에 상당한 법기능적 등가물로서 전자문서의 문서성(documentation)을 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8조에서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35] 이 경우 정보는 전자문서에 의제된다.

동 규정은 전자문서의 법적 허용에 따른 UNCITRAL MLEC 제5조 내지 제6조,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의 법적 승인에 따른 UECIC 제8조 제1호,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과 전자서명 및 전자계약의 법적 승인에 관한 UETA 제7조, 전자기록 및 진정성에 대한 법적 승인 및 전자적 대리인 이용에 관한 UCITA 제107조,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호와 동일한 규정이다.

다만 당해 규정에 있어 특이할 사항은 2008년 NITC에 의한 ETA의 개정법령에 있어 제반 태국의 국내법적 법률효과의 인정요건으로서 스탬프(stamp)에 의한 전자문서와의 등기능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어떤 문서가 법률에 의해 스탬프와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이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방법은 관련 정부기관의 규정에 달리 제한이 없다면 이러한 문서는 스탬프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여 여타 태국 국내 실정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전자문서 내지 정보의 형식요건(form requirements)과 관련하여 ETA 제10조에서는 정보는 원본문서로 제시하거나 원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법이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최종적인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부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에 관하여 신뢰할

32) 八尾 晃,「貿易·金融の國際取引 : 基礎と展開」, 東京經濟情報出版, 2001. p.63.

33) MLEC, Art. 6, (1),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in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 data message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UECIC, Art. 9, (2),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34) MLEC, Art. 5, bis., "information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solely on the grounds that it is not contained in the data message purporting to give rise to such legal effect, but is merely referred to in that data message.", UECIC, Art. 8, (1),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is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2) "Nothing in this Convention requires a party to use or accept electronic communications, but a party''s agreement to do so may be inferred from the party's conduct."

35) ETA, Sec. 7, "information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and enforceability solely on the ground that it is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원본문서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한요건으로 정보의 완전성 내지 신뢰성 확보 여부의 법적 인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관련 권한기관에 위임해 두고 있다.

당해 규정은 마찬가지로 2008년 개정조문으로서 제11조 전자문서의 증거력 보장규정에 의해 보충되는데,[36] 그 내용은 법적 절차에서 전자문서는 증거로 확보될 수 있는 제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전적으로 거부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 경우 전자문서의 증거력 인정요건은 신뢰성 확보여부에 있어 그 방법 또는 작성·저장 또는 전달하는 방식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7]

2)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

ETA에서는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한 이에 상당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UECIC를 제외한 타 법률의 규정에서는 볼 수 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를 명정하고 있는데, 곧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offer) 또는 승낙(acceptance)은 전자문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전자문서에 의한 청약과 승낙은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38] 다만 UECIC에서와 같이 제11조 청약의 유인(invitations to make offers), 제12조 계약체결 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의 이용(use of

---

36) ETA, Sec, 10, "... as amended now stipulates that if the published electronic data is completely identical to the electronic data and certified by the relevant authorized agency, such published item can be used as the original electronic data.", Sec. 11, "... of the original Act provided for the admissibility of electronic evidence in legal proceedings. The amended Act particularly identifies legal proceedings as civil, criminal and any other cases. In assessing the evidential weight of electronic data to determine whether it is reliable or not, the manner in which or the method by which the electronic data was generated, stored or communicated, the manner in which or the method by which the completeness and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was maintained and the manner in which or the method by which the originator was identified or indicated, including all relevant circumstances are to be considered."

37) 참고로 MLEC 제7조 (1)에서는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으로써 당해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제반 법체제하에서 주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어떠한 상황 하에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적당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UECIC에서는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UECIC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 경우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면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명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당해 당사자의 의도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사용된 경우 그리고 그 사용된 수단이 관련 합의내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생성 또는 유통되는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적시된 기능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법적 안정성 및 순기능적 차원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38) ETA, Sec, 13, "an offer or acceptance in entering into a contract may be expressed by means of a data message. A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solely on the grounds that such offer or acceptance is made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제13조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contract terms)에 대한 명시적인 효력부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여타 법규범에 견줄 경우 ETA의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된다.

한편 ETA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을 의도하고 있음에 반하여, 달리 전자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 또한 존치해 두고 있지 않은데, 선언적 효력이나마 전자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내용의 부재 또한 이에 상당한다. 같은 시각에서 이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또한 ETA의 처지에 비견할 수 있다.

이 같은 논점에 참조할 수 있는 법규범은 위 UECIC 당해 조문을 열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차례로 청약의 유인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문신청을 위하여 상호작용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한 제안을 포함하여,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그 정보시스템 사용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안은 그 제안을 승낙에 기속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는 것,[39] 계약체결 시 자동화 메시지시스템 이용의 경우 자동화 메시지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 메시지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연인이 그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는 것,[40]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의 경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자적 의사표시의 교환을 통하여 계약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상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전자적 의사표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위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지 못한 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지 아니한다는 것[41] 등이다.

---

39) UECIC, Art. 11, "a proposal to conclude a contract made through one or more electronic communications which is not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arties, but is generally accessible to parties making use of information systems, including proposals that make use of interactive applications for the placement of orders through such information systems, is to be considered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unless it clearly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party making the proposal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40) UECIC, Art. 12,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or by the interaction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or intervened in each of the individual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or the resulting contract."

41) UECIC, Art. 13, "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a party that negotiates some or all of the terms of a contract through the exchang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o make available to the other party those electronic communications which contain the contractual terms in a particular manner, or relieves a party from the legal consequences of its failure to do so."

3) 전자문서의 송 · 수신시기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에 비하여 '익명적 상거래'(anonymous commerce)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사후의 구제수단이 취약하고 그 회복과정이 복잡다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상거래 안전'과 '계약당사자 보호'라 할 수 있다.[42] 이 같은 배경에서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시기의 확정이라는 시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ETA 뿐만 아니라 여타 법규범에서는 대부분 공히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대한 규정을 명정해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한 실정이다. 이에 ETA의 주요 규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ETA에서는 전자문서의 송·수신자 간 의사표시나 통지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이는 전자문서의 문서성에 기한 제7조의 연관규정으로서, 곧 선언적 규정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이는 전자문서가 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그 단서규정으로서 전자문서의 송신인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람일 경우와 송신인이나 송신인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람에 의해 사전에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프로그램된 정보시스템에 의할 것을 당해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수신인이 전자문서를 수신인의 것으로 여길 권리를 표창하기 위해서는 당해 전자문서가 송신인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송신인]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및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발신된 경우를 제한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6조).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내지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유를 조각한다.

한편 전자문서의 수령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하 각 사항이 참조되는데, 곧 송신인은 당해 전자문서의 수령에 관하여 특별한 형태나 방식 등에 의한다고 하는 수신인과 별단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당해 수령여부는 수신인이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또는 수신인이 송신인에게 표시하기 위한 충분한 행위에 의해 수신인의

42) Jan Grijpink, "New Rule for Anonymous Electronic Transaction? : An Exploration of the Private Law Implications of Digital Anonymity",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JILT)*, Univ. of Warwick and Univ. of Strathclyde, 2001. 7.

전자문서 수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송신인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당해 법적 함의를 새길 수 있다. 따라서 송신인은 당해 전자문서가 수신인으로부터 수령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지받는 즉시 그 전자문서의 송신에 따른 자신의 행위를 보장받게 된다(제19조).

다른 한편 송신인이 수신인의 수신확인 응답을 받은 경우 그것은 수신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며(제20조), 이 경우 수신확인에 따른 통지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수신인이 관련 전자문서를 수신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송신인과 수신인으로 합의 또는 해당 표준이 전제되어야 한다(제21조).

전자문서의 발송은 전자문서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때 송신인의 통제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며(제22조), 전자문서의 수령은 이러한 전자문서가 수신인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타 법규범에서의 도달주의의 수용과 다르지 않은 규정이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신에 대한 특정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것은 전자문서의 수령이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수령이 그 문서가 정보시스템 내에서 검색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제23조).

한편 전자문서의 발송 또는 수령은 발신인의 영업소에서 발송하거나 수신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령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송신인이나 수신인이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영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만약 당해 연관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 영업소를 전자문서가 발송되거나 수령되는 곳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위 영업소에 대한 특정은 여타 법규범에 비할 경우 의외의 규정으로서 이 경우 별단의 주의가 요구된다.[43] 그렇지만 송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상거소가 전자문서의 수령 혹은 발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간주하고 있음은 여타 법규범과 다르지 않다.

---

43) 참고로 UECIC 제6조의 규정은 영업소의 위치 명정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당사자의 영업소는 당사자가 표시한 장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나, 다만 그 영업소 표시를 한 당사자가 그 장소에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반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영업소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려진 상황이나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시 당사자가 고려한 상황을 참조하여 관련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이 이 협약상의 영업소가 된다고 하고 자연인이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영업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어느 장소가 단순히 당사자가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또는 기술이 위치한 곳, 타방 당사자가 그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곳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소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가 단지 특정 국가와 연관된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다는 추정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Ⅳ. 시사점 및 결론

1. 태국 ETA의 입법적 평가 및 시사점

한편 태국 ETA의 입법적 평가 내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TA는 전자거래에 있어 전자문서를 전통적 종이문서와 기능적 등가물로서 동일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확보, 종전 전자거래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법적 기준의 제시, 정부주도의 전자거래 촉진,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안성 강화, 정보보호,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제고에 그 제정취지를 두고 있다.

둘째, ETA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내용이 여타 국제법규범 내지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명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이를테면 거래와 전자거래, 정보, 전자서명, 인증서 및 서명자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여 정의하거나 또는 구체화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동 법의 적용상 순기능적 차이점이 돋보인다.

셋째, ETA는 전자거래의 적용범위를 민사적·상사적 활동에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고 있음과 동시에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 적용대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국제상거래 활동에 국한하고 있는 UNCITRAL MLEC에 비하여 보다 확장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및 유관 법률에 비하여 그 대상을 명료히 특정·포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법적 의의를 돋보이고 있다.

넷째, ETA에서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 또는 전자적 대리인 등 이상의 요건을 정의규정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여타 개별 조문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음에 따라 그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능상 정보시스템에 수용하여 이를 합체하여 다루고 있거나 또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의제해 두고 있다.

다섯째, ETA 일반규정에서 명정하고 있는 사항은 대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을 포함하여 여타 법규범에 비할 경우 별단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서명 및 국내법상의 효력요건을 부가하기 위한 관련 용어를 제외하고, 여타 법규범에서는 존치해 두고 있지 않은 거래, 전자거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해 용어의 법적 시사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여섯째, 특이할 사항은 2008년 ETA의 개정법령에 있어 제반 태국의 국내법적 법률효과의 인정요건으로서 스탬프에 의한 전자문서와의 등기능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어떤 문서가 법률에 의해 스탬프와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이는 전

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방법은 관련 정부기관의 규정에 달리 제한이 없다면 이러한 문서는 스탬프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여 여타 태국 국내 실정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곱째, ETA에서는 UECIC를 제외한 타 법률의 규정에서는 볼 수 없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의 효과를 명정하고 있는데, 곧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offer) 또는 승낙(acceptance)은 전자문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전자문서에 의한 청약과 승낙은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UECIC에서와 같이 청약의 유인, 계약체결 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의 이용,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인 효력부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여타 법규범에 견줄 경우 ETA의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된다.

2.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함의

태국의 ETA를 통한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에 대한 법적 함의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명료히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해 구분에 따른 법적 실익은 기 살핀바와 같고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전자거래기본법상의 법명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정의규정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일례로 연관규정으로서 동 법 제30조에 비추어 자구의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불식시킬 수 있는 단초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또한 그 법명을 '전자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로 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곧 당해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곧 상행위를 전 범위로 한 전자상거래로 의제하고 있는 규정을 이 같은 취지에서 삭제하고 동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적 대리인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대한 별단의 규정없이 다만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 내에 합체하여 규정해 두고 있는 바, 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특정 및 법률효과 발생을 위한 선언적 효력을 고려하여 이를테면 UETA 및 UCITA 내지 UECIC의 규정에 상당하게 별도로 규정해 둠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에 관하여 UECIC에서는 동 협약이 기술적 중립성과 등기능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통일적 규정은 당사국이 관련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각각 상이한 법률·사회·경제제도를 가진 제반 당사국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44] 같은 취지에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을 공히 보장하고는 있으나(제4조),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문서의 형식요건(form requirement)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해 인증신청에 있어 일정한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이 경우 전자문서 적용범위에 기하여 전자문서의 제한요건을 동 법 내에 수용해 두어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 생각된다.

셋째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에 대한 추보규정과 형식요건에 있어서의 제한요건이 일부 미비한 실정이다.

넷째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제6조 제1항), 아울러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수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6조 제3항). 또한 영업소가 복수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보고,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송·수신시기에 대한 동 법의 규정은 '입력된 때'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자문서의 송·수신책임에 기한 관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환언하면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이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관계에 있어 작성자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확정함에 있어 아울러 법률관계의 명료한 확정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UECIC상의 '떠난 때 또는 떠나지 않았다면 수신된 때'라고 하는 내용에 준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는 한편으로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매개로 한 '상업적 전자문서 인증시스템'(commercial certificate systems of electronic message)의 효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다섯째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의 효과에 관하여 동 법에서의 내용은 '전자적 장치와 체계'라고 하는 명료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개념에 대한 명확성 및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아울러 순기능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기타사항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은 작성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송신자의 정의규정,

44) UECIC Preamble, "Being of the opinion that uniform rules should respect the freedom of parties to choose appropriate media and technologies, taking account of the principles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functional equivalence, to the extent that the means chosen by the parties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rules of law, Desiring to provide a common solution to remove legal obstacles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a manner acceptable to States with different leg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에 대한 별단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당해 전자문서에 기한 기속효과를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작성자의 대리인, 전자문서 인증시스템 내지 자동화된 메시지시스템, 전자적 의사표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나희량,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경제의 대응과 변화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동남아학회, 2010.

심종석,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 협약의 평가와 실무적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11.

_____,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3.

Jan Grijpink, "New Rule for Anonymous Electronic Transaction? : An Exploration of the Private Law Implications of Digital Anonymity",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JILT)*, Univ. of Warwick and Univ. of Strathclyde, 2001. 7.

Steven H. Gifis,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6.

UN Publication Sales No. : E99.V4 (ISBN 92-1-133607-4), 1999.

八尾 晃, 貿易·金融の國際取引 : 基礎と展開, 東京經濟情報出版, 2001.

전자거래기본법, 「법률 제10250호」 (2010.10.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0172호」 (2010.03.22).

'電子署名及び認証業務に關する法律'.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1990)'.

'Digital Signature Act (1997)'.

'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

'ICC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eUCP)'.

'OECD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1997)'.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E-SIGN)'.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UECIC)'.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MLEC)'.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UEC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

「www.law.upenn.edu/bll/archives/ulc/ecom/ueta_final.pdf」

「www.nccusl.org/nccusl/ucita/UCITA_Summary.pdf」.

「www.nitc.go.th」.

「www.thaiembassy.or.kr」.

「www.thailaws.com」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5-89450_Ebook.pdf」.

「www.uncitral.org/pdf/english/texts/electcom/06-57452_Ebook.pdf」.